

## 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274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승인 조건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7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삼성자산운용(주)

2. 취소내용

- 삼성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분할승인 당시('16.11.30.) 부과한 조건\*을 취소한다.

\* 분할회사는 분할완료보고 후부터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관된 업무는 영위할 수 없음

3. 취소일 : 2023. 7. 19.